

# FTA 체결에 따른 전자원산지증명서 활성화 방안\*

e-C/O under FTA

이창숙(Chang-sook Lee)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무역학부 강사(주저자)

김종철(Jong-chill Kim)

신라대학교 상경대학 무역학과 교수(교신저자)

##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선행연구                  | 참고문헌     |
| III.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및 문제점 | Abstract |
| IV.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의 개선방안  |          |

## 국문초록

FTA를 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FTA 체결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이다.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무역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특혜 적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보다는 주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FTA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정착 및 활성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현황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실무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전자원산지증명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발급시스템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54-B00040)

## I. 서론

우리나라가 미국·EU·인도·ASEAN 등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협정당사국 간에 관세 철폐에 따른 무역 특혜를 부여받는 것이다. 하지만 FTA로 인해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가 가장 관건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원산지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물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HS Code<sup>1)</sup>를 수단으로 FTA 협정에 따라 관세 철폐 및 특혜 대상물품이 다르며 원산지 결정기준 또한 상이하다. 즉 FTA는 품목(HS Code)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설정하여 동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에 한하여 관세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원산지 및 원산지증명서가 기업 경영환경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FTA가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sup>2)</sup>를 갖고 있는 가운데, 변화하는 FTA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들에게 성장전략과 대처방향 등 적시적소에 원산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먼저, 국제상업회의소를 비롯하여 영국, 말레이시아, 미국 펜실베이니아 등의 상(공)업회의소에서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서둘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6월, 국제상업회의소에서는 전자원산지증명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 먼저 전자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여 전자원산지증명서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다면 향후 FTA 체결 국가는 물론 그 이외의 국가들과도 원활한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sup>3)</sup>

다음으로, 수출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0년 4월 1일 기존의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제도<sup>4)</sup>를 개정하여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는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시간과 비용을 절

1) 국제거래 물품에 대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 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로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HSK(HS of Korea)로 10자리를 사용하며, EU 및 중국은 8자리, 일본은 9자리, 미국은 10자리를 사용하고 있다.

2) FTA 영향 및 인식 정도에 관한 설문('09.4, 재정부)결과, 응답 기업의 64%가 FTA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 <http://news.smba.go.kr/news/board.do?method=execView&sc.newsId=14877>

3) 2009 세계 원산지증명서 조사(World CO Survey)에 따르면 전자원산지증명서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칠레, 크로아티아, 덴마크, 에티오피아, 독일, 온두라스, 홍콩, 아일랜드, 코트디부아르, 일본, 케냐, 한국, 몽골,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루마니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영국 그리고 미국 등에서 인정하고 있다. <http://www.iccwbo.org/Chamber-services/Trade-Facilitation/Certificates-of-Origin/CO-Webinar/#Q17>

4) 인증수출자제도란 관세 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획재정부, 『FTA활용 실무매뉴얼』 2011.1, p.114.

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따라서 전자원산지증명서와 인증수출자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FTA 체결 효과는 상당히 클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전자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허브(uTradeHub)라는 단일창구를 만들어 수출입 유관기관의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에서부터 원산지 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 및 개선할 경우 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의 활성화는 FTA 관련 기업의 거래선 다변화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적 발급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원산지관리시스템이 개선 및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체계를 검토한 후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실무적·시스템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FTA 관련 기업의 전자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관련 사이트를 통해 검색된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그리고 관련 학회에서 간행된 참고문헌 등을 이용하였다. 특히 한국무역협회의 전자무역추진센터와 한국무역정보통신을 비롯하여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등 FTA와 관련된 기관에서 제공된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FTA 관련 기업들이 전자무역플랫폼 등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받는 데에 한정하였다.

## II. 선행연구

FTA와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FTA 원산지 관련 규정 및 결정기준에 대한 연구이다. 두 번째는 원산지 확인 및 검증 등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이다. 마지막으로 실무적 측면에서 원산지증명 시스템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FTA 원산지 관련 규정 및 결정기준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영수·권순국(2011)<sup>5)</sup>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 적용을 실질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도록 FTA 원산지

5) 이영수·권순국,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지, 2011.2, pp.493~518.

규정의 주요 내용과 적용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례를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김무한(2010)<sup>6)</sup>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별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원산지 기준의 엄격성지수와 기업의 활용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후 FTA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제시하였다. 김석오·정재완(2010)<sup>7)</sup>은 특혜원산지 규정의 주요 내용과 현재 운용 중인 국내 이행입법체제를 비교·분석하여 효과적인 이행입법체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아·태 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해 각료선언으로 채택된 원산지증명 및 검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제현·김연숙(2007)<sup>8)</sup>은 한·EU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산업별 실효관세율, 산업별 무역규모와 무역수지, 산업별 수입시장 점유율로 분석하여 산업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제시하여 한·EU FTA 원산지 규정의 협상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원산지 확인 및 검증 등 사후관리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재완(2012)<sup>9)</sup>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8개 FTA에 규정된 원산지 검증의 특징을 분석하고,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원산지 검증 현황을 분석하여 원산지 검증 행정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원산지 검증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준수·조준영(2012)<sup>10)</sup>은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선결조건과 원산지 검증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국제원산지정보원에 FTA 컨설턴트로 등록된 10명의 관세사와 세관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 원산지 검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심갑영(2012)<sup>11)</sup>은 한·미 FTA 협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미국의 수입통관 및 원산지 검증제도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한·미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종관문인 미국의 FTA 원산지 검증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 바람직한 방향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원산지증명 시스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이제현·정재완(2011)<sup>12)</sup>은 특혜원산지증명서와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여러 법령에 분산됨에

6) 김무한,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0.

7) 김석오·정재완, “특혜원산지 입법체제의 간소화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pp.44-76.

8) 이제현·김연숙, “한·EU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7, pp.339-360.

9) 정재완, “FTA 원산지검증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5권, 한국무역상무학회지, 2012.8, pp.243-264.

10) 전준수·조준영 “한·EU FTA 원산지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2.5, pp.45-68.

11) 심갑영, “우리나라 대미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고찰”, 『관세와무역』, 제44권 통권 481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2. <http://cafe.naver.com/songaji9543/721>

12) 이제현·정재완,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9, pp.75-103.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무역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심종석(2010)<sup>13)</sup>은 FTA 중심 요소 중 원산지 규정 내지 이에 관한 관리체계의 개선, 보완과제에 주안점을 두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일창구 기반 uTradeHub상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기반 구축에 대한 플랫폼의 골격을 제시하였다. 심종석·오현석(2009)<sup>14)</sup>은 FTA 기업의 전자적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준호(2008)<sup>15)</sup>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체로 상공회의소의 포함여부와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남풍우(2007)<sup>16)</sup>는 한·ASEAN FTA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결정기준과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전자원산지증명서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 부담을 줄이고 FTA 활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자무역기반 시스템 구축에 대한 당위에 기하여 FTA 혜택의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그간의 FTA별 복잡다양한 원산지 결정 요건의 충족관리, 증명관리, 입증서류 구비 및 유통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및 보완에 있어 고려 또는 수용할 수 있는 일말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Ⅲ.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및 문제점

#### 1.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 (1) 관세청 UNI-PASS

관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대상국 및 품목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출물품의 HS Code 및 FTA별 양허대상 여부 확인<sup>17)</sup>, 상대국의 HS 6단위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sup>18)</sup>, 상대국의 HS 최종단위별

13) 심종석, “FTA 원산지관리체계 분석을 통한 uTradeHub상 e-C/O 관리시스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국제e-비즈니스학회, 2010, pp.319~342.

14) 심종석·오현석, “FTA 기업의 전자적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고찰”,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9권 제4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9.12, pp.1~19.

15) 최준호, “FTA 원산지증명서 운용 효율화를 위한 발급기관 선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3, pp.155~174.

16) 남풍우,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6, pp.183~203.

17) 기관발급 대상 협정 : 한·싱가포르, 한·ASEAN, 한·인도, 한·페루

협정세율 확인<sup>19)</sup>,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1]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둘째, 원산지증명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비서류는 수출신고필증(전산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함), 원산지소명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하는 원산지 확인서류 등이다.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예 : 원재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ill of Material : 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매뉴얼, 홍보책자 등)가 필요하며,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비원산지재료, 원산지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 관련 입증서류(예 : 자재명세서, 원재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가 있어야 한다. 또한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 기타 해당 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의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선하증권 사본(선적 후 발급신청 시) 및 사유서(선적일 30일 경과), 위임장(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신청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이다. 인증수출자는 발급신청시 상기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선적 후 소급발급일 때에는 선하증권 사본과 사유서, 위임받은 자가 신청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셋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UNI-PASS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신청시기 및 신청자는 <표 1>과 같고, 원산지증명서 신청방법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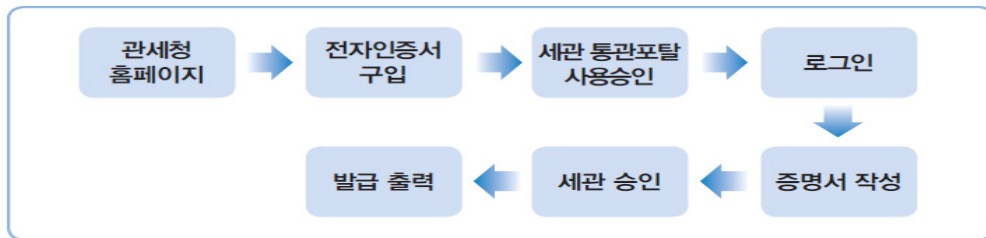
18)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협정세율 및 원산지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 협정명(예시 : ASEAN)을 선택 → 해당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검색  
 19)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협정세율 및 원산지기준 → ‘수출시 세율’ 선택 → 국가명(예시 : 태국)을 선택 → 해당품목 검색



〈표 1〉 원산지증명서 신청시기 및 신청자

구분	한·싱가포르	한·ASEAN	한·인도	한·페루
신청시기	원칙 :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 인도네시아는 선적 전 발행을 불인정하므로 선적 후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한·ASEAN : 선적 3일 이후 'ISSUED RETROACTIVELY' 문구 인쇄 한·인도 : 선적 7일(근무일) 이후 'ISSUED RETROSPECTIVELY' 문구 인쇄			
신청자	수출자 (위임받은 자 포함)	생산자 또는 수출자 (위임받은 자 포함)	생산자 또는 수출자 (위임받은 자 포함)	수출자 (위임받은 자 포함)

[그림 2] 원산지증명서 신청방법



넷째, 원산지증명서 발급승인절차가 이루어진다. 발급기간은 신청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일 이내)이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보정기간은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만약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이 반려된다.

다섯째, 정정발급이 가능하다. 수출신고필증의 정정, 원산지증명서의 오타자, 수량·품목번호 등의 착오, 누락 또는 기재오류 등을 이유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비서류는 사유서, 정정사유 입증 자료, 기(既) 원산지증명서 원본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구비서류는 사유서, 원산지증명서 제4부분(한·인도 협정의 경우) 등이 필요하며, 재발급 문서에 ‘CERTIFIED TRUE COPY’ 문구가 인쇄된다.

(2)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는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이원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먼저, 수출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가공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



자료 : <http://cert.korcham.net/html/origin2/co02.jsp>

다음으로, FTA 특혜 활용을 위하여 수출품이 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



자료 : [http://cert.korcham.net/html/fta2/fta03\\_01.jsp](http://cert.korcham.net/html/fta2/fta03_01.js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웹 인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EDI를 이용할 수 있다. 웹 인증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관할 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과 전자공인인증서(범용/전자무역용)를 준비하고, 무역인증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신청해야 한다. 상공회의소는 접수된 원산지증명서를 심사하여 심사조건에 충족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승인을 하고, 승인결과를 SM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보한다. 신청기업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결제하고, 웹 인증시스템에서 발급 완료된 원산지증명서를 A4용지에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EDI를 이용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KT-NET에서 EDI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상공회의소에 서명등록 및 전자공인인증서, EDI 이용신청서를 등록하고 KT-NET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신청해야 한다. 상공회의소는 접수된 원산지증명서를 심사하여 심사조건에 충족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승인을 하여 KT-NET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신청기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sup>20)</sup>를 결제하고, 상공회의소 웹 인증시스템의 EDI 출력관리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A4용지에 컬러프린터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sup>21)</sup>



다만 EDI 방식의 경우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만 가능하며, 더 이상 신규가입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 FTA-PASS**

관세청에서는 체계적인 원산지관리, 인증수출자 요건, 원산지 검증 대비 등을 위하여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개발하였다. FTA-PASS는 원산지관리프로그램으로서 수출물품에 대한 기초정보의 관리, 원산지 판정수행, 원산지증명서류(원산지증명서,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확인서)를 발급 및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sup>22)</sup>

특히 FTA-PASS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체를 위하여 관세청 지원<sup>23)</sup>으로 (재)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한 웹사이트로서 홈페이지(<http://www.ftapass.or.kr>)<sup>24)</sup>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표 2> FTA-PASS 사용자 매뉴얼 현황

구분	표준형		LITE 형	
	WEB 버전	PC버전 표준형	PC버전 LITE 일반	PC버전 LITE 섬유·의류
+ 다운로드				
+ 최종등록일	2012-11-09	2012-10-18	2012-10-18	2012-10-18

20)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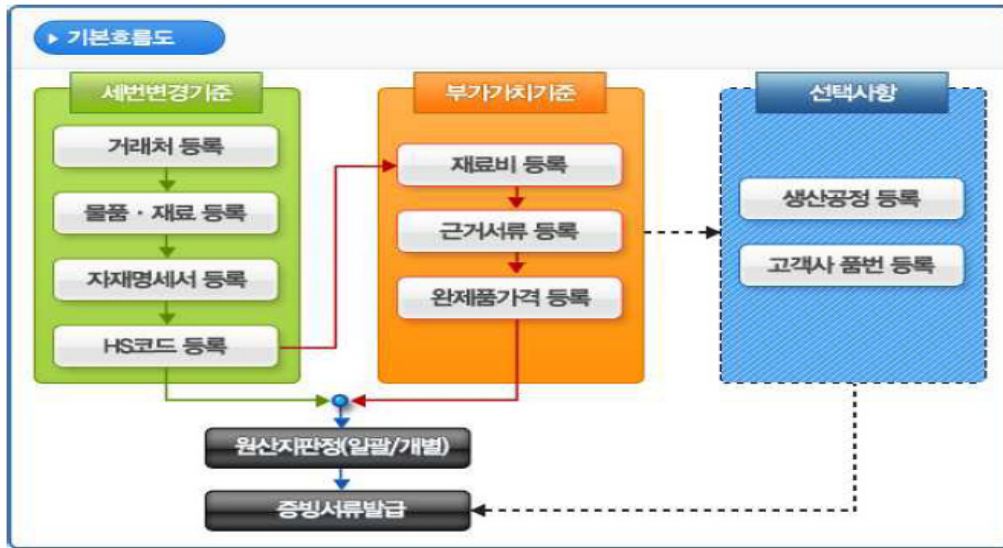
증명서 종류	수수료(부가세 포함)		비고
	회원	비회원	
서명등록	무료	55,000원	
원산지 증명	일반 원산지증명서	무료	* EDI 3,500원
	관세양허 원산지증명서	1,500원	1,500원
	FTA 원산지증명서	무료	무료
상업송장 등 기타 무역증명서	무료	7,000원	

자료 : [http://cert.korcham.net/html/sign2/sign04\\_01.jsp](http://cert.korcham.net/html/sign2/sign04_01.jsp)

- 21) [http://cert.korcham.net/board/index.htm?method=list&boardCode=FAQ&cateSno=142&search\\_key=&search\\_word=&listSize=10](http://cert.korcham.net/board/index.htm?method=list&boardCode=FAQ&cateSno=142&search_key=&search_word=&listSize=10)
- 22) [http://www.kita.net/jsp/wiki/WIKI002.R02.cmd?n\\_index=104771&pagenum=1&charSet=N&ckval=0&cmd\\_id=WIKI002.R01.cmd&ndirid=19&eng=Y](http://www.kita.net/jsp/wiki/WIKI002.R02.cmd?n_index=104771&pagenum=1&charSet=N&ckval=0&cmd_id=WIKI002.R01.cmd&ndirid=19&eng=Y)
- 23)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은 영세하여 외부전문가의 도움이나 지원 없이는 자체적으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수석, “한·EU FTA의 원산지기준과 원산지증명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6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1.12, p.286.
- 24) 2011.10.04.일부터 웹용 FTA-PASS의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원산지관리시스템은 「www.ftapass.or.kr」에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http://www.ftapass.or.kr/notice/dtlView.do>

[그림 5]는 웹(WEB) 버전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대한 기본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FTA-PASS 프로그램 사용절차(WEB 버전)



따라서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은 FTA-PASS를 이용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FTA-PASS를 통하여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기관발급 시 UNI-PASS를 통해 첨부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발급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기존에 발급해 오던 종이 발급방식을 전자적 형태의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으로 전환한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전자원산지증명서의 활성화는 이루지 못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이유는 발급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절차와 서류관리, 원산지업무 지식 부족, 전담인력 부재 등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원활히 발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sup>25)</sup>이기 때문이다.

25) 원산지증명 발급절차와 규정에 대해서는 77.1%의 수출기업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나, ‘복잡한 절차와 서류관리’(53.3%), ‘원산지업무 지식 부족’(36.1%), ‘전담인력 부재’(27%)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지역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증명 발급실태 및 애로조사”, 보도자료, 2012.12.24.

특히 대기업도 원산지 관리 소홀로 인하여 FTA를 제대로 활용하고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7월 관세청장은 “한·EU FTA의 90%, 한·미 FTA의 85% 이상 수출물량을 처리하는 대기업에서 원산지 검증결과와 일부 협정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드러났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실제로 일부 대기업이 근거자료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수출자 명의로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게다가 상업서류가 아닌 별지에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송장과 원산지증명서 상의 물품 규격을 달리하여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6)</sup>

따라서 정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정착과 발급근거 즉 해외 거래업체의 요청에 의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sup>27)</sup>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원산지에 대한 관리 및 발급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의 문제점을 실무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4장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1) 실무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첫째, HS가 개정됨에 따라 통관에 사용되는 HS Code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 적용되는 HS Code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HS는 1983년 6월 13일 제정되어 1988년 1월 1일에 발효된 이후 1992년, 1996년, 2002년, 2007년, 그리고 2012년으로 총 5차례 개정<sup>28)</sup>이 이루어졌다. 관세청과 관세사사무소 등에 따르면, HS 2012는 세계관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 WCO)의 HS협약 개정안 등의 반영으로 주 55개, 4단위 57개, 6단위 576개 및 10단위 1,667개 등을 포함하여 총 2,355개 품목의 HS Code가 바뀌었다.<sup>29)</sup>

하지만 FTA는 협정 당시의 HS Code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 발효된 HS 시행년도에 따라서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sup>30)</sup> 한·미 FTA의 경우에는 HS 2002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나머

26)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383067&cp=nv>

27)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65.6%가 응답하였으며, 가장 큰 이유로 ‘해외 거래업체의 요청’(68.8%)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관세혜택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16.3%), ‘국내 거래업체의 요청’(15.0%)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 전계보도자료.

28) HS를 개정하는 이유는 첫째, HS 품목분류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제무역 패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이다. 둘째, 신상품 출현 등 현행 HS 품목표로 포괄할 수 없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 또는 호, 코드신설 또는 통합하고 있다. 셋째, HS 코드 번호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계 교역량 및 상관행 등을 반영하여 HS 코드 등의 신설·삭제·통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약국이 제기한 기존의 HS 분류체계의 모순점 수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29) [http://www.weeklytrade.co.kr/sub\\_read.html?uid=21414&section=sc4&section2=](http://www.weeklytrade.co.kr/sub_read.html?uid=21414&section=sc4&section2=)

30) 수출입통관 단계에서의 서류작성 HS 기준

지 7개의 FTA<sup>31)</sup>는 HS 2007을 기준으로 원산지 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s : PSR)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HS 연계표<sup>32)</sup>를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수출물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등 원산지 증빙서류 자율발급이 곤란하거나 발급되었더라도 허위 및 오작성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sup>33)</sup>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뿐만 아니라 여타 협력업체의 도움이 없으면 정확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곤란하다. 하지만 거래처 확인서 발급 비협조가 15.6%로 나타나고 있다.<sup>34)</sup>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을 심사할 경우 반드시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한다. 즉 원산지증명 관련 서류를 모두 확보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 확인서류에는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sup>35)</sup>, 국내제조(포괄)확인서<sup>36)</sup> 등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원산지소명서는 수출물품이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로 필수 제출 서류이다. 수출자 또는 완제품 제조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인증수출자 지정신청 및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원산지소명서는 실제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정할 수 있는 모든 근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서류 중의 하나이다.

다음으로 원산지확인서는 완제품 및 원재료가 FTA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이다. 수출자 또는 제조자에게 완제품 또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자가 작

HS 기준	HS 2012	HS 2007
수입자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출자	수출신고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원산지확인서류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생산자(물품 공급자)	없음	원산지확인서류

자료 :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48&layoutMenuNo=11170&ntId=504](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48&layoutMenuNo=11170&ntId=504)

- 31) 기 발효 FTA :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 32) 관련기관에서는 HS 2012에서 변경된 부분은 엑셀 및 한글 파일로 연계되어 제공하고 있다. HS가 변경된 품목은 총 376개 이다.
- 33)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연구보고서 08-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12.30., p.39.
- 34) 광주상공회의소, 전계보도자료.
- 35)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초종물품 생산자 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작성·제공하는 서류이다.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계서, p.59.
- 36)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생산자 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 제공한다. 국내제조확인서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상계서, 2012.11, p.62.

성하기 때문에 협력업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류이다. 즉 수출자와 제조자, 제조자와 제조자 간에 공급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유일한 서류인 것이다. 동 서류는 원산지소명서와는 달리 공급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지 아닌지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 이유는 제조자의 제조물품에 대한 정보가 수출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양식 하단에 작성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문구<sup>37)</sup>가 삽입되어 있다. 작성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문구가 삽입되어 정확한 작성을 유도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문구만으로는 허위 및 오작성을 예방하기는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국내제조확인서는 수출품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 및 입증하는 서류이다.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동 서류는 원산지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제조자 간에 또는 제조자와 수출자 간에 원산지 관련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자가 FTA를 활용하기 곤란한 측면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다.

이와 같이 상기의 원산지증명 확인 서류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서류 작성자가 수출자를 비롯하여 물품 생산자에 이르기까지 관련 당사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허위 및 오작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셋째,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창구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이 있다.<sup>38)</sup> 기관발급방식인 경우에는 세관과 상공회의소로 나누어진다.<sup>39)</sup> FTA 원산지증명서는 관할지에 관계없이 전국 세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69개 지역 상공회의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sup>40)</sup> 이와 같이 발급기관 및 창구의 상

37)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이 작성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상계서, p.60.

38)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구분	기관발급	자율발급
정의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협정	한·싱가포르, 한·ASEAN, 한·인도, 한·페루	한·칠레, 한·EFTA, 한·EU, 한·미, 한·페루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수출자(한·미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유효기간	1년(한·ASEAN 6개월, 한·칠레 2년, 한·미 4년)	
사용언어	영어사용원칙(한·미 : 영어, 한글)	
사용회수	1회 사용원칙(한·미 : 12개월 내에 포괄발급 가능)	

39)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및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특혜관세적용과 관계없이 우리나라가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일반원산지증명서는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하고 있는 것이다.

40) 단, 역외 가공인 개성공단에서 제조한 물품은 세관에서만 발급하고 있다.

- 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 GSP특혜를 받기 위하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
- APTA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 GSTP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이로 인하여 기업은 시스템별로 다른 원산지증명 절차를 준수하거나 근거서류 등록으로 인하여 발급의 번거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 기관의 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예를 들어 EU 국가의 현황이 출처에 따라 27개국<sup>41)</sup>과 28개국<sup>42)</sup>으로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2) 제도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첫째,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관련기업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리를 위해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지원 및 원산지관리 전문인력양성 지원을 요구하고 실정이다.<sup>43)</sup> 더욱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후 사후검증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sup>44)</sup>

둘째,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에 대한 품목별 및 업체별 관리를 위한 법제도가 미비하여 원산지 관리의 강제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원산지 규정 위반시 부과되는 처벌유형과 수준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22조(벌칙)<sup>45)</sup> 및 제24조(과태료)<sup>46)</sup>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 법에 해당되지 않는 위반 행위는 관

- GATT TNDC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 FTA 협정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 기타 우리나라산 물품이 특혜관세를 공여받는 경우

- 41)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태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룩셈부르크, 몰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user.fta> 2010.FtaApp&c=1008
- 42) 오스트리아(Austria), 벨기에(Belgium), 영국(Britain), 체코(Czech Republic), 키프로스(Cyprus), 덴마크(Denmark), 에스토니아(Estonia), 핀란드(Finland), 프랑스(France), 독일(Germany), 그리스(Greece), 헝가리(Hungary), 아일랜드(Ireland), 이탈리아(Italy), 라트비아(Latvia), 리투아니아(Lithuania), 룩셈부르크(Luxembourg), 몰타(Malta), 네덜란드(Netherlands), 폴란드(Poland), 포르투갈(Portugal), 슬로바키아(Slovakia), 슬로베니아(Slovenia), 스페인(Spain), 스웨덴(Sweden), 불가리아(Bulgaria), 루마니아(Romania), 크로아티아(Croatia). <http://www.customs.go.kr/kcshome/site/psr/Psr.do>
- 43) FTA 원산지증명 발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발급절차 및 서류 간소화’(60.7%)를 가장 많이 요구했으며, 이어서 ‘원산지증명 교육 및 컨설팅’(41.0%),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20.5%),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지원’(12.3%), ‘원산지확인서 제3자 인증제도’(7.4%) 순으로 응답했다. 광주상공회의소, 전계보도자료.
- 44) FTA 원산지증명 사후검증 대비 여부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있다’가 36.9%, ‘대비하지 않는다’가 63.1%로 나타났으며, ‘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형태로 ‘수작업(엑셀관리 등)’(35.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외부위탁(관세사 등)’(24.4%), ‘자체시스템(ERP 등)’(22.2%), ‘FTA PASS’(11.1%), ‘FTA Korea’(4.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비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51.9%)를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이어서 ‘사후검증에 대한 이해 부족’(28.6%), ‘전문 인력이 없어서’(13.0%), ‘원산지관리시스템이 없어서’(3.9%), ‘관세사 등 비용부담 때문에’(1.3%) 순으로 나타났다. 상계보도자료.
- 45) 원산지 결정을 위해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가 제출한 서류를 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류의 허위 발급이나 작성,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정해지는 물품을 당해 용도 외에 사용, 관세를 면제받은 특정 물품을 당해 용도 외에 사용, 관련 서류의 미보관인 경우 2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과실에 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46)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서면, 현지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인을 받지 않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원



세법<sup>47)</sup>에서 규정하고 있다. 처벌규정도 중요하지만 원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사후 대비할 수 있는 절차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인증수출자제도의 활용도가 여전히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sup>48)</sup> FTA 체결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sup>49)</sup>되었다. 더욱이 수출 기업의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2010년 4월 1일 기존의 제도를 개정하여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구분하여 확대 적용하고 있다.<sup>50)</sup> 하지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가장 문제점이었던 복잡한 절차와 서류관리에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획득한 기업이 적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인증수출자 5,432개 업체 중에서 對EU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가 5,135개 업체라는 것이다.<sup>51)</sup>

넷째, FTA 체결국 간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연계가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자원산지증명서로 발급하였더라도 상대국과의 상호 인증 및 시스템 미구축 등 연계 부족으로 다시 종이원산지증명서로 발급하거나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sup>52)</sup>

산지증명서류의 오류통보를 받고도 세액 정정 및 수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7) 수입자의 경우 허위 신고 및 미신고,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 부정한 방법으로의 관세 감면이나 관세 환급을 받은 경우는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를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48)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현황에 대해서는 ‘계획 없음’(48.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품목별인증 취득’(27.0%), ‘신청 준비중’(14.8%), ‘업체별인증 취득’(5.7%), ‘심사중’(2.5%) 순으로 조사됐다. ‘계획 없음’을 응답한 가장 큰 이유로 ‘거래국가 해당사항이 없어서(62.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어서 ‘관심과 이해도 부족’(23.7%), ‘인증수출자 지정요건과 절차의 복잡함’(11.9%)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 전계보도자료.

49) 기획재정부, 전계서, p.114.

50)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인증유효기간	3년	2년(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협정별 원산지 증명 능력 및 법규준수도

자료 : [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2&page=/fta2010/html/kor/export\\_info/certify/DBAQ215.html&mc=FTA2010\\_EXPORT\\_INFO\\_060](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2&page=/fta2010/html/kor/export_info/certify/DBAQ215.html&mc=FTA2010_EXPORT_INFO_060)

51) 2012년 국정감사, 2012년 9월 말 기준 ; 신한관세법인, Zoom In Trade, 2013.6, <http://blog.naver.com/shinhan22?Redirect=Log&logNo=130169193140>

52) 서울본부세관,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받기』, 2012.11, p.45.

## IV.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의 개선방안

### 1. 실무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첫째, HS 개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개정된 HS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체결될 FTA의 경우에는 HS 개정에 대한 사전합의를 통하여 현행과 같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수출물품의 우리나라 HS 6단위와 수입국의 HS 6단위가 상이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HS 6단위는 수입국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6단위가 상이할 경우 수입국의 HS Code로 적용하되 수입국에서 HS를 달리 운영하고 있다는 증빙서류(수입국의 품목번호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등)를 첨부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와 수입국의 HS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동일한지도 확인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업에는 원산지증명을 하기 곤란하다.<sup>53)</sup>

이런 상황에서 HS의 개정에 따른 부담까지 기업에 부여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또한 동일한 HS Code 내에서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어려움도 있다. HS는 무역을 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충족 요건일 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도 상품 및 재료의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원산지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사후관리의 안정성 측면을 위해서라도 HS Code 분류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관련 당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원산지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출물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등 원산지 증빙서류 자율발급이 곤란하거나 발급되었더라도 허위 및 오작성될 수 있는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원산지 관련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삽입하여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거나 특혜 적용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도 원산지 확인 서류 작성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나친 법률관계를 강조할 경우 거래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 간에 성실한 자세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상호 협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FTA 협정별 기준을 준수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창구를 일원화하여 적용할 경우 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더욱 용이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자무역의 발전으로 인하여 전자무역플랫폼 등 Single Window를 제공하여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일괄처리 가능한 기반을 구축한 상태이며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53) 상게서, p.42.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원산지증명서의 역할 및 목적에 따라 즉 관세특혜 또는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각각 다른 기관 및 창구를 이용<sup>54)</sup>하도록 하기보다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창구는 일원화하고, 발급해 주는 기관의 인증만 정확히 이루어질 경우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2. 시스템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첫째, 기업의 ERP 시스템 등의 관련 시스템 구축지원 및 연계를 통하여 원산지 판정이 정확히 내려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품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원료와 제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지 않는 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급망 관리를 통하여 전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검토한 현행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경우 단순히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자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전산입력에 의하여 전자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자적으로 원산지가 관리되어 최종적으로 전자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될 경우 그 효율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향후 체결될 수 있는 FTA의 경우에도 즉시 적용 가능하여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원산지 관리 관련 법제도의 강화 및 원산지 관리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무역협회와 한국은행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을 개정하여 내국신용장의 전자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13년 2월부터 내국신용장의 개설과 통지업무가 전자화되었으며, 2014년 2월까지 매입업무까지도 전면 전자화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sup>55)</sup> 이와 같이 원산지와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할 경우 원산지의 관리 및 사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수입물품 유통이력 대상물품의 지정기준이 사회 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에 한하여 적용<sup>56)</sup>되고 있다. 적용되고 있는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대상물

54) 예를 들어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원산지관리시스템인「FTA-PASS」를 개발·무료로 보급하여 2010년 9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연간 10회 이내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다수가 FTA 전담직원이 없거나 결직하고 있어, 교육기회가 제공되어도 참여가 어렵다. 이에 따라 별도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의 FTA-PASS를 직접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간편 발급 서비스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관세청, “어렵고 복잡한 원산지판정, FTA-PASS로 간편하게 해결 : 관세청, 중소기업용 간편 발급 FTA-PASS 서비스 개시”, 보도자료, 2012.6.3.

55) 한국무역협회, “내국신용장 업무, 이제는 편리하게 사무실에서 하세요” 보도자료, 2013.02.01.

56) 관세법, 제240조의2

품<sup>57)</sup>은 주로 식품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하지만 FTA 적용대상물품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입 및 국내 유통이력이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의 허위 및 오류 발급을 예방할 수 있으며, 발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업의 ERP 시스템 구축이 선행될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FTA의 필요성, 비용 등의 문제로 구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에서 유통이력 대상품목을 확대할 경우 기업들의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유통이력 대상품목이 FTA 특혜 적용대상물품뿐만 아니라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위하여 향후 전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원산지위반 고위험 품목부터 적용한다면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인증수출자로 지정될 경우 제출 서류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전자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즉 원산지증명서의 원활한 발급을 위하여 시스템 개선 등의 방안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빠르게 간소화하는 방법은 인증수출자의 지정확대일 것이다. 이에 따라 인증수출자 지정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인증수출자의 지정확대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해 준 인증수출자에 의해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이기 때문에 국가 간 전자원산지증명서 효력의 상호 인정에도 신뢰성이 향상되어 국가 간 원산지증명서 연계 또한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한·ASEAN FTA 등은 인증수출자로 지정될 경우 기관발급 시 발급 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한·EU FTA는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자는 인증수출자로 인증 받아야만 원산지증명이 가능하다.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비교는 <표 3>과 같다. 이와 같이 인증수출자로 지정될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용이하다. 하지만 2012년 12월 23일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내 122개 수출기업을 대상<sup>58)</sup>으로 조사한 결과 ‘인증수출자’제도 현황에 대해서는 ‘계획 없음’(48.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품목별인증 취득’(27.0%), ‘신청 준비 중’(14.8%), ‘업체별 인증 취득’(5.7%), ‘심사 중’(2.5%)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FTA 원산지증명 발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발급절차 및 서류 간소화’(60.7%)를 가장 많이 요구하였다<sup>59)</sup>는 것이다.

57) 천일엽(비식용), 대두유(비식용), 복어(금밀복), 안경테(전체), 황기(식품용), 백삼(식품용), 냉동고추, 뽕장어, 선글라스, 구기자(식품용), 당귀(식품용), 냉동조기, 견고추, 향어, 활낙지, 지황(식품용), 천궁(식품용), 사탕무당(설탕), 산수유(식품용), 오미자(식품용), 냉동옥돔, 작약(식품용), 황금(식품용),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미꾸라지 등이다.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3-2호, 2013.2.1).

58) FTA 원산지증명 발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65.6%가 FTA 원산지증명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 전계보도자료.

59) 상계보도자료.

〈표 3〉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비교

협정	인증 전	인증 후
한·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li> </ul>
한·ASEAN 한·싱가포르 한·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작성 (전산으로 신청)</li> <li>첨부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신고필증 사본</li> <li>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li> <li>원산지소명서</li> <li>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li> <li>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li> </ul> </li> <li>현지확인(필요한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작성 (전산으로 신청)</li> <li>첨부서류 제출 생략</li> <li>현지확인 생략 가능</li> </ul>
한·E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li> </ul>
한·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화 2,000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만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화 2,000달러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모두 가능</li> </ul>
기타	동 제도 미 적용	

자료 : [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2&page=/fta2010/html/kor/export\\_info/certify/DBAQ216.html&mc=FTA2010\\_EXPORT\\_INFO\\_060](http://fta.customs.go.kr/kcsweb/user.tdf?a=common.HtmlApp&c=1102&page=/fta2010/html/kor/export_info/certify/DBAQ216.html&mc=FTA2010_EXPORT_INFO_060)

넷째, 전자원산지증명서의 활성화 및 단절 없는 전자원산지증명서의 유통을 위하여 상호 연계 및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ASEAN FTA, 한·인도 CEPA 등 원산지증명서를 기관발급하는 경우 협정 상대국에 우리나라의 Web-based 방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을 홍보 및 안내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세관에서는 흑백으로 인쇄된 원산지증명서를 반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발급 완료된 원본을 반드시 컬러인쇄 하여 수입국 Buyer에게 전달하여야 한다.<sup>60)</sup>

또한 원산지증명서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인쇄 오류 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존재하고 있다. 한·ASEAN FTA는 뒷면에 ‘Overleaf(작성방법)’를 반드시 인쇄하여야 한다. 뒷면 ‘Overleaf’를 인쇄하지 않을 경우 수입국 세관으로부터 특혜세율 적용 신청 시 반려될 수 있기<sup>61)</sup> 때문이다. 현행의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발급과정에서만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최종 수입자 또는 수입국세관에 전달될 경우 종이로 특히 칼라 인쇄를 통하여 교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60) 서울본부세관, 전게서, p.45.

61) 상게서, p.46.

## VI. 결론

관세청은 FTA 교역량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FTA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은 2011년 9월말까지 49건이 접수되어 1년 전 8건에 비하여 6배나 증가하였다.<sup>62)</sup>

또한 관세청이 FTA 상대국을 대상으로 적발한 원산지증명 위반사례도 2008년 971건, 2009년 607건, 2010년 188건, 2011년 10월까지 138건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다. 원산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에는 세관당국의 고강도 세무조사와 막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최장 과거 5년간의 해당 수출액이 특혜관세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관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sup>63)</sup> 따라서 전자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통하여 올바른 원산지증명이 시급히 정착되어 FTA 특혜관세 적용의 확대뿐만 아니라 향후 여타 국가와의 수출입 교역 확대 및 국가이미지 향상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에 따른 실무적 및 시스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실무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HS 개정에 따른 협의가 부재하여 통관에 사용되는 HS Code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에 적용되는 HS Code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HS 연계표를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또한 동일한 HS Code 내에서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어려움도 있다. 따라서 HS Code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원산지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고, 사후 관리의 안정성 측면을 위해서라도 HS 개정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개정된 HS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연계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체결될 FTA의 경우에는 HS개정에 대한 사전합의를 통하여 현행과 같은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수출물품의 제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등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하거나 발급되었더라도 허위 및 오작성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관련 당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원산지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FTA 협정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창구가 상이하다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원산지증명서의 역할 및 목적에 따라 즉 관세특혜 또는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각각 다른 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기보다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창구는 일원화하고, 발급해 주는 기관의 인증

6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402228>

6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402228>



만 정확히 이루어질 경우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시스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료의 구입에서부터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공급망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전산화 되어 있지 않은 기업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증명서 발급 수수료 지원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원가입비 지원 등의 일시적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보다는 기업의 ERP 시스템 등의 관련 시스템 구축지원 및 연계를 통하여 원산지 판정이 정확히 내려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에 대한 품목별 및 업체별 관리를 위한 법제도가 미비하여 원산지 관리의 강제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들어 수입물품 유통이력 대상품목이 FTA 특혜 적용대상물품뿐만 아니라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위하여 향후 전면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원산지 위반 고위험 품목부터 적용한다면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인증수출자 제도의 활용도가 여전히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FTA 원산지증명 발급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조사에 따른 결과 ‘발급절차 및 서류 간소화’가 가장 많이 요구되었다. 현행 제도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증수출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수출자 지정이 확대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인증수출자 지정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FTA 체약국 간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연계가 미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의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발급과정에서만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최종 수입자 또는 수입국 세관에 전달될 경우 종이로 특히 칼라 인쇄를 통하여 교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자원산지증명서의 활성화 및 단절 없는 전자원산지증명서의 유통을 위하여 상호 연계 및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반으로 전자원산지증명서의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및 법적 기반이 병행되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원산지증명서 활성화를 기점으로 진정한 전자무역을 실현하는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관세청, “어렵고 복잡한 원산지판정, FTA-PASS로 간편하게 해결 : 관세청, 중소기업용 간편 발급 FTA-PASS 서비스 개시”, 보도자료, 2012.6.3.
-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지역 수출기업의 FTA 원산지증명 발급실태 및 애로조사”, 보도자료, 2012.12.24.
- 기획재정부, 『FTA 활용 실무매뉴얼』, 2011.
- 김무한,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0.
- 김석오·정재완, “특혜원산지 입법체제의 간소화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연구보고서 08-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12.30.
- 남풍우,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9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7.6.
- 서울본부세관,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받기』, 2012.11.
- 손수석, “한·EU FTA의 원산지기준과 원산지증명제도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26권 제4호, 한국국제상학회, 2011.12.
- 심갑영, “우리나라 대미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검증 대응전략 고찰”, 『관세와무역』, 제44권 통권 481호,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2.
- 심종석, “FTA 원산지관리체계 분석을 통한 uTradeHub상 e-C/O 관리시스템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국제e-비즈니스학회, 2010.
- \_\_\_\_\_·오현석, “FTA 기업의 전자적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고찰”,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9권 제4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9.12.
- 이영수·권순국, “FTA 원산지규정 위반 판정사례와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제49권, 한국무역상무학회지, 2011.2.
- 이제현·김연숙, “한·EU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한 실증연구”, 『무역학회지』, 제32권 제5호, 한국무역학회, 2007.
- \_\_\_\_\_·정재완,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2권 제3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9.
- 전준수·조준영 “한·EU FTA 원산지검증시스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2.5.
- 정재완, “FTA 원산지검증행정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55권, 한국무역상무학회지, 2012.8.

최준호, “FTA 원산지증명서 운용 효율화를 위한 발급기관 선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3.

한국무역협회, “내국신용장 업무, 이제는 편리하게 사무실에서 하세요” 보도자료, 2013.02.01.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국제상업회의소, <http://www.iccwbo.org>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한국무역협회, <http://kita.net>

FTA-PASS(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http://www.ftapass.or.kr>

FTA 포털(자유무역협정 열린 정보마당), <http://fta.customs.go.kr>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

## ABSTRACT

### e-C/O under FTA\*

Chang-sook Lee\*\* · Jong-chill Kim\*\*\*

The most fundamental reason why FTA Agreement must be concluded is based on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among country parties. In order to get applied by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under an FTA, the parties need to meet the rules of origin and the criteria stipulated under the FTA simultaneously. In addition, Certificate of Origin(C/O) document is required to claim for the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FTA Agreement.

In South Korea, the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can be issued by the UNI-PASS and FTA-PASS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The Web Certification System of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also is established. But the majority cases of requesting the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are generally performed by the business partners. The settlement and activation of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are urgently needed to maximize the effects of FTA,

First, this paper examines the application situation of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thoroughly. Second, the current circumstances related to electronic Certificate Origin are analyzed in the practical and systematic perspectives. Finally, the improvements for activating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is suggested.

**Key Words** : FTA, Electronic Certificate of Origin, UNI-PASS, FTA-PASS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11-354-B00040)

\*\* Lecture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Pusa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Silla University